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6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조후정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8,34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404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20.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채117416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이라 한다) 사건에서 A이 배당받을 배당금 중 31,557,22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담당공무원은 2021. 1. 5. A에게 배당할 배당금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배당원리금 31,558,344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10. 이 사건 공탁금을 추심하고, 같은 해 4. 21. 추심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A은 부산지방법원 2019하단1339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여 2021.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21. 4. 16. 피고에게 위 추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참조), 다만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 자체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를 한 때에 추심한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고 강제집행은 종료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채무자 A이 배당받을 배당금 중 31,557,2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21. 2. 10. 31,558,344원을 추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다른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A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31,558,344원을 추심하기 이전인 2021. 1. 19.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있는바, 피고가 A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A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2021. 1. 19.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2021. 2. 10. 추심한 추심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0. 12. 23. 채무자 A에게 배당할 배당금 중 31,557,221원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배당되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인 2021. 1. 19.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0. 12. 23. 피고 앞으로 31,557,221원이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심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배당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배당금에 대한 추심신고를 마친 때에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피고의 A에 대한 채권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A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인 2021. 2. 10.에야 위 배당금을 추심하여 같은 해 4. 21. 추심신고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가 참고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소멸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558,3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의 반환 구한 날 이후인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